

[사 건 명] 행심 2018 - 4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3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3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 남학생으로, 2018. 4.경부터 발생한 같은 반 피해학생 □□□, ㉠㉠㉠, ㉡㉡㉡, ㉢㉢㉢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2018. 7. 18.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13일,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 조치하기로 결정하여 2018. 7. 19. 동 처분이 내려졌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8. 8.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사과편지를 쓰면 용서해준다고 해놓고 사과편지를 쓰니 진실성이 없다며 학폭위에 올린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이 심하여 남녀 구분 못하고 여자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출석정지라는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취업하는 데에 있어 타격이 매우 크다.

다. 청구인의 진술서는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여 조치원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학폭위에서도 청구인은 피해학생들의 진술내용에 대해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처벌하였다.

라. 조치결과 통지서 조치원인 3번의 선생님께 했던 ‘... 생린데 기저귀 안가져왔나 보네... ’ 내용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과 무관한데 왜 조치 원인에 기재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 학폭위 개최 시 경찰위원 2명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경찰위원 2명은 참석도 안한 채 학폭위가 열렸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이것은 피해자 진술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반 여학생들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략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친해서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난이라고 볼 수 없고, 언어폭력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 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 탕탕볼 젤리 같은 것을 칼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난치면서 ‘DD’ 라고 한 것을 여학생들은 ‘DD’ 가 ‘덜도’ 라는 성기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여 기분이 나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사과하는 데에 있어 피해학생들은 건성으로 시늉만 내는 것으로 비춰져 이에 여학생들이 말로만 그러느냐고 하자 청구인은 매점에서 뭐라도 사줘야 되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자료(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추가로 담임의견서, 반장 ▲▲▲을 포함 같은 반 남학생 4명의 진술서를 제출) 및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4월경부터 같은 반 피해여학생들을 상대로 돼지, 똥똥하다, 못생겼다는 등 외모비하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늦게 내려오면 “빨리 내려와, 돼지들아.” 라고 말하였다. 4월 초 반티셔츠를 정할 때 테니스 치마를 보고 우리 반 애들 입으면 못생기고 다리가 두꺼워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

나.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 ○○○ 학생이 실수로 청구인을 쳤을 때 ○○○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청구인은 “미안할 짓을 하지 마. 돼지기 싫으면.” 이라고 말하였다.

다. ○○○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과 ○○○의 얼굴을 그리고 하트를 그려 넣었고, 이 학생 둘의 러브스토리를 써서 남학생들과 돌려보았으며, ■■■■과 ○○○을 엮어서 노래가사를 개사하여 부르고 다녔다.

라. 탕탕볼 젤리 같은 것을 칼 모양으로 만들어 ‘DD’ 라 부르며 “■■■■, ▲▲▲ 똥꼬에 꽂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체육복을 갈아입는 중

■■■■의 티셔츠를 벗기려하여 피해여학생들로 하여금 ■■■■의 상체를 보게 하였다.

마. 청구인이 담임선생님께 혼나고 왔을 때 다른 학생들에게 들릴 정도로 담임선생님에 관해 “생리인가, 생리대 안차고 왔다.” 라고 말하였고, 반장이 담임선생님께 혼나고 오면 반장에게 “떡혔냐?” 라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경찰위원 2명의 입회하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경찰위원 2명은 참석도 안한 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경찰위원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부모 위원 4명, 교사 위원 1명이 참석한 이 사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

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법률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이 피해여학생들의 외모에 관해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 사과하는 ○○○에게 폭언한 점, ○○○이 싫어함에도 ■■■■ 학생과의 러브스토리를 쓰고 노래를 개사하여 놀린 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탕탕볼 젤리 같은 것을 칼 모양으로 만들어 ‘DD’라 부르며 “■■■■, ▲▲▲ 똥꼬에 꽂아주겠다.”고 말한 점은,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피해여학생들이 아니더라도 피해여학생들 또한 당시 같은 반에 함께 있었고 ‘DD’를 성인용품 정도로 이해하였는바(청구인은 ‘DD’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담임선생님에게 혼나고 와서 한 혼잣말이나 반장에게 했다는 말은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여학생들 외에 남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학생들에게 들릴 정도로 생리인가, 먹혔냐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여학생들에 대한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7. 18.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위원 각자 점수를 산정한 뒤(10점 2명, 11점 2명, 16점 1명) 다수결에 따라 그 중 낮은 처분인 6호 출석정지 처분을 하였고, 그 기간에 관해서는 과거 출석정지 10일을 처분한 사안보다 중하다고 보고 개학 후부터 8월 말까지인 13일로 정하였다. 이에 부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하였다.

점수 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각 항목별(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로 판정 점수를 협의하여 항목별 점수를 산출한 뒤 각각 산출된 판정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조치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나, 위와 같이 위원 각자 총점을 산출한 뒤 다수결에 따라 가장 낮은 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

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적어도 보통 내지 높음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라.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